



## 상주시의회 공고 제2021-22호

「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11월 22일

상주시의회 의장



### 「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예고

#### 1. 제안이유

현행법상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·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 「유엔아동권리협약」 제31조, 「유엔장애인권리협약」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(游乐権)를 실현하기 위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용어의 정의 추가(안 제2조)
- 나. 통합놀이터 설치 가능 조항 보완(안 제3조)

#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

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11월 29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정(안)	수정(안)	수정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- 1) 전자우편: juntae0819@korea.kr
- 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- 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2)에
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##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화번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